

의안번호	제 350 호
의 결 연 월 일	2012년 6월 일 (제 311 회)

**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 
조례안**

발 의 자	최진섭 의원
발의연월일	2012년 6월 4일

#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(최진섭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5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2년 6월 4일

발 의 자 : 최진섭 의원

최미애, 장병학, 박상필,

이광희, 전응천, 하재성 의원

## 1. 제정이유

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「지방자치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의안의 비용추계에 대한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 1조, 제2조).

나.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(안 제3조)

1) 교육감이 제출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

2) 제외대상

가)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

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나)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) 주민청구 조례안도 도의회에 부의할 때 비용추계서 첨부함.

다.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(안 제4조)

1) 비용발생요인,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, 재원조달 방안 등 기재

2)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함.

3)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간으로 함.

마. 중앙정부이전수입,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, 기타이전수입, 자체수입, 지방교육채, 예비비 등의 재원조달 방안을 명시함(안 제5조).

바. 비용추계서 작성부서 및 협의(안 제6조)

1) 비용추계서는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하고,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 가능하게 함.

2) 비용수반 입안 시 세입 및 예산 업무담당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함.

### 3. 제정 조례안 : 붙임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66조의3, 제132조

나. 관련부서 협의 :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예산과와 협의함.

다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

가) 기 간 : 2012.5.14. ~ 2012.6.3.(20일간)

나) 제출의견 : 없음

다) 반영여부 : 없음

(2) 규제사항 : 해당없음

##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3 및 제132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의안"이란 발의·제안 또는 제출되어 의결을 요하는 각종 안건을 말한다.
2. "재정수입"이란 국가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.
3. "재정지출"이란 국가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.
4. "비용추계서"란 발의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·재정수입의 순감소액(이하 "비용"이라 한다)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.

**제3조(비용추계서 작성 대상)** ① 충청북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발생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·첨부하여야 한다.

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

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교육·학예에 관한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도 주민대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·첨부하여야 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**제4조(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등)**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요인,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, 재원조달 방안,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,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.

③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,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.

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.

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,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.

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중앙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,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.

**제5조(재원조달 방안의 작성)** 의안의 발의·제안·제출자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할 때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중앙정부이전수입,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, 기타이전수입, 자체수입, 지방교육채,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작성부서 및 제출시기)**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·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.

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세입 및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.

③ 비용추계서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법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의원발의 조례안 등 협조)** 충청북도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「지방자치법」 제132조에 따라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경우 업무 소관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비용추계작성 및 조례안이 마련 되도록 협조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## 충청북도교육청 ○○○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 1. 사업개요

○

○

### 2. 비용 발생 요인

### 3. 관련조문

### 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나. 추계 결과

다. 재원조달방안

### 5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6. 작성자 : △△국 △△ 과장 ○○○

(전문기관 : △△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○○○)

## 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    년)	2차년도 (    년)	3차년도 (    년)	4차년도 (    년)	5차년도 (    년)	계
세 입						
△△△△ △△△△ △△△△						
세 출						
△△△△ △△△△ △△△△						
재원 조달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
	국고보조금					
	보통교부금					
	특별교부금					
자체 수입	소 계					
	자체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

○○○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**1. 재정수반요인**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(「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○호에 해당하는  
지 표시)

**3. 미첨부 사유**

(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)

**4. 작성자 :** △△국 △△ 과장 ○○○

## 관 계 법 령 발 취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66조의3(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32조(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)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